경기도 공고 제2025-547호

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2차 지정계획 공고

「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제3조 및 제5조, 행정안전부「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4일 경기도지사

I 추진목적

O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·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II 추진개요

- O (지정규모)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름
- O (지정유형) 예비마을기업
- O (지정기간) 예비마을기업 2년(자치단체 심사로 연장 가능)
- O (지원내용)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
- O (지정절차) 공고 및 심사, 시군 추천으로 구분

구 분	예비마을기업
보조금	1천만원
자부담	보조금 20% 이상
특 례	 (인구감소지역) 자부담 경감(20%→10%) 및 예비마을기업 보조금 상향 지원(1천만원 →2천만원) 가평, 연천(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-15호(2024. 2. 27.)) (청년마을기업) 자부담 경감(20%→10%)

Ⅲ 추진절차 및 일정



^{*} 상기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

Ⅱ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

- O (접수기간) '25. 3. 6.(목) ~ 3. 21.(금) 18:00 / 2주간
- O (접 수 처)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- O (신청방법) 방문 또는 우편* 접수(팩스, e-mail 접수 불가)
 *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

2 서류보완

- O (보완기간) '25. 3. 24.(월) ~ 3. 27.(목) / 1주간
- O (주요내용)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구비·증빙서류 누락 등 보완 ※ 마을기업 재정 지원 내용 변동 시 관련 자료 추가 제출 필요(별도 안내 예정)

③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

- O (실사기간) '25. 3. 31.(월) ~ 4. 8.(화) / 9일간
- O (주요내용) 시군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하고,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道 추천
 - ※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사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서류보완

④ 道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

- O (심사기간) '25. 4. 23.(수) ~ 4. 24.(목) / 2일간
- O (심사결과) [예비] 지정 여부 확정
- ㅇ 道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

IV 신청자격 및 지정·운영요건

【 신청자격 】

- O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*
 - *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. 단,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해야 함.

□ 예비마을기업 지정·운영요건

O (공동체성)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

구 분	주 요 내 용				
① 지점	① 지정요건				
1	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- 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과 법인 회원(출자자)이 동일해야 함 -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-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				
2	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(출자자)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- 마을규모, 지역범위,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※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				
3	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				
4	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				
	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(출자자)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 (균등)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			
5	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이고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[*] 의 지분 합은 50% 이하여야 함 * 특수관계인 :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, 형제·자매				
② 운영	② 운영요건				
1	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(출자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,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함				
2	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,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			

<질의> 출자금액과 마을기업 자부담과의 관계는?

- ⇒ 출자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을 포함한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, 법인 출자금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 금액으로 사용 가능
 - ※ (예시) 기존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, 추가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자부담 금액을 1천만원 출자한 경우, 총 출자금액은 1억 1천만원

O (공공성) 마을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 하여야 함

구 분	주 요 내 용				
① 지점	① 지정요건				
1	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·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,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			
2	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, 일자리 및 소득 창출,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				
3	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				
4	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,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주민총회,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·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				
5	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-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,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-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				
② 운영	병요건				
1	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* 및 고용의 형평성**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* 일자리의 질 :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** 고용의 형평성 : 다양한 계층·연령·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				
2	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-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·계획과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				

<질의> 마을기업의 임원이 선출직으로 당선될 경우, 마을기업의 임원을 사퇴해야 하는지?

- ⇒ 별도의 사퇴 규정은 없으며, 법인 형태별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
 - 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) 임직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
 - ※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44조(임직원의 겸직금지) ⑤항
 - (영농조합법인 등) 관련 규정 없음

O (지역성)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읍면동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

구 분	주 요 내 용		
① 지기	덩요건		
1	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·운영되어야 함		
2	지역에 소재하는 자원(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자원)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		
3	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
4	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- 지역주민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,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-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,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		
② 운영요건			
1	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·소비·교환·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		
2	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(70%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)		

≪ 지역의 범위(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) ≫

- '읍·면·동'을 기본으로 함(행정동 기준,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)
- •설립 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, 예외적으로 '시·군·구' 까지 확대하고 주민(시·군·구 기준)이 회원의 8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- 단, '인구감소지역'은 주민(시·군·구 기준)이 회원의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- '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,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·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
 - ※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,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

<질의1> 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에 공무원이 참여 가능한지?

- ⇒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규정에 따라 불가능
 - ※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25조,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10조

<질의2> 대의원이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, 지역주민을 어떻게 산정하는지?

⇒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라 대의원을 둔 경우, 대의원의 80% 이상이 해당 지역의 주민 이면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O (기업성)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, 정부 및 자치 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

구 분	주 요 내 용					
① 지기	① 지정요건					
1	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					
	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					
2	-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, 인적·기술적 역량*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* 회원의 경력·경험, 사업에 필요한 인·허가, 자격증 보유					
	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					
3	-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(단,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)					
② 운약	경요건					
	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					
1	-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% 이상을 적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				
2	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					
3	2012년 이전에 비(非)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,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)					

<질의1>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법인 설립 유형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?

⇒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(민법상 법인, 상법상 회사, 협동조합, 영농조합 등)으로 여건에 맞는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

<질의2>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?

⇒ 기업이 법인의 매출액, 월별 추진실적 등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항을 입증

② 예비마을기업 교육 가점

O (이수대상) 예비마을기업 이수 시 가점부여

구 분	구 분 교육대상 교육명		비고
예비	회원 5인 이상 (대표자 포함)	입문교육(7시간)	가점 3점 [*]

^{*} 가점 부여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

- O (교육운영) 온라인 상시학습으로 운영
 -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(www.gseek.kr) 내 의무과정으로 편성
 - 회원가입/로그인 > '마을기업' 검색 > '경기도 마을기업 필수교육'수강 신청 > 본인인증 > 학습하기
- O (이수확인) 온라인 학습 완료 후 수료증 출력
 - 로그인 > 내 공간 > 수료증 내역> 수료증 발급 > 수료증 저장/출력

【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】

- O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
 -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-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- O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 -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
 -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
 -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
 - ※ 신규·재지정·고도화 마을기업, 재도약, 우수, 모두애(愛)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
 -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V 제출서류

O 예비마을기업 재무제표 추가제출 필수

구 분	제출서류		들서류 -	비고			
		• 사업신청서		• [서식 1-1~3] 마을기업 사업신청서			
		• 회원 명단		•[서식 2] 마을기업 회원 명단			
		•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		•[서식 4]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			
		• 법인등기부등본		•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			
		• 정관					
기본 서류	공통	• 자부담 통장		• 법인명의 통장(대표자 명의 X) - 자부담 이체 후 확인증 시군 제출 • 비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후 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 - 법인 설립 후 자금을 이체하고 확인증 시군 제출 • 기존 출자하여 확보한 법인 기금으로 자부담 활용 가능 - 법인 기금에서 자부담 일괄 사용 시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며, 출자금 명부 및 희의록 등 증빙서류 제출			
		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(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		l			
	추가 (회차별)	예비	• 재무제표	• '22~'23년 재무제표			
		신규 (1회차)	• 입문교육 수료증	•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수료증 출력/저장			
			• 전문교육 수료증	•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수료증 출력/저장			
			• 실적보고서	• [서식 3] 마을기업 실적보고서(전년도 실적)			
					고도화 (3회차)	• 정산서류	• 2회차 정산서류
		(32/11)	• 재무제표	• 전년도 재무제표			
			• 근로자명부				
	• 사업자	등록증 사	본	•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			
	• 임대차	계악서 /	사본	•계약기간 명시			
기타	• 인허가증명서 사본(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)			• 토지이용규제확인서,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			
증빙 서류	• 가점 힝	목을 증대	명할 서류	• 여성 마을기업 대표, 청년마을기업, 교육 수료증 등			
, 11	집행실기	. – – –	의된 사항과 보조금 준비사항 등을 확인 서류	• 법인 회의록 등 - 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			

VI 기타 안내사항

- O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,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O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임
- O 신청기업은 담당 공무원의 신청 및 구비·증빙서류 확인,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등 각종 심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
- O 심사과정에서의 검토 및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O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「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의 규정에 따름

VII 문의 처

구 분	부 서	전화번호	구 분	부 서	전화번호
경기도	사회적경제육성과	031-8008-3586	하남시	일자리경제과	031-790-5011
수원시	지역경제과	031-228-3881	광명시	사회적경제과	02-2680-0741
용인시	민생경제과	031-6193-2637	군포시	자치분권과	031-390-0940
고양시	소상공인지원과	031-8075-3724	양주시	일자리경제과	031-8082-6091
화성시	사회적경제과	031-5189-6059	오산시	지역경제과	031-8036-7585
성남시	지역경제과	031-729-3663	이천시	일자리정책과	031-644-4198
부천시	일자리정책과	032-625-2703	안성시	일자리경제과	031-678-0777
남양주시	일자리정책과	031-590-8907	구리시	산업지원과	031-550-2044
안산시	소상공인지원과	031-481-2609	의왕시	자치행정과	031-345-2132
평택시	미래전략과	031-8024-3525	포천시	일자리경제과	031-538-2275
안양시	고용노동과	031-8045-5123	양평군	일자리경제과	031-770-2208
시흥시	일자리 총 괄과	031-310-6053	여주시	일자리경제과	031-887-2284
파주시	일자리경제과	031-940-5073	동두천시	일자리경제과	031-860-2368
김포시	지역경제과	031-980-2746	과천시	복지정책과	02-2150-3693
의정부시	일자리정책과	031-828-2372	가평군	일자리정책과	031-580-2326
광주시	지역경제과	031-760-2672	연천군	경제교통과	031-839-2457

붙임 1 마을기업 유형

Ⅱ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

- O (예비)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
- O (신규)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
- O (고도화)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

② 사업성격에 따른 구분

- O (지역자원 활용형)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·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기업
 - 사업계획서에 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지역자원 활용계획 반영
 - 지역특산물 가공, 관광·체험, 지역 먹거리(로컬푸드) 등
- O (사회서비스 제공형)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·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
 - 정관, 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, 사업비의 50%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
 -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, 공동육아, 방과후학교, 주거복지 등
- O (마을 관리형) 마을자산 운영,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
 - 정관, 사업계획서 등에 마을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, 사업비의 50%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
 - 마을주차장 운영,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
 - ▶ 마을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마을기업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신청
 - ▶ 행정안전부나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지정심사 시 유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유형을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유형 변경에 따른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

③ 청년마을기업

- O (정의) 청년*들이 주도하여 설립·운영하는 (예비)마을기업
 - *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
- O (혜택) ^①자부담 경감(20%→10%), ^②지역주민비율 완화(70%→50%), ^③심사 가점([2점] 예비, 신규, [3점] 고도화)
- O (회원요건)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, 지역주민비율 및 청년회원비율 충족

<질의> 회원(출자자) 수에 따른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은? (청년회원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)

- ⇒ 회원(출자자) 5인 : 지역주민 5인 이상 & 청년 3인 이상
 - 회원(출자자) 6인 : 지역주민 5인 이상 & 청년 3인 이상
 - 회원(출자자) 10인 : 지역주민 5인 이상 & 청년 5인 이상

O (청년회원비율) 시군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(30%~50%)

── ≪ 청년회원비율 기준 ≫ -

시군 청년인구비율*	15% 미만	15% ~ 20% 이하	20% 초과
청년회원비율	30%	40%	50%

- *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.mois.go.kr 참고(신청연도의 직전년도인 '24. 12. 31. 기준 적용)
- 청년마을기업으로 3회차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회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- 청년마을기업의 경우,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·휴학생 또는 졸업생^{*}(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)도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 *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으로 확인
- O (청년비율 유지) 청년마을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회원비율 등 청년마을기업의 회원요건을 유지하여야 함
 - 지정 당시 청년이었던 회원이 지정된 연도에 청년 나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청년회원으로 간주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회원 변경
 - 일반회원 증가 및 청년회원의 나이 초과 등으로 청년회원비율을 유지 하지 못할 경우 일반 마을기업으로 전환 또는 지정 취소됨
- O (기타사항) 청년마을기업도 특별히 명시된 혜택·요건 외에는 일반 (예비) 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이 필요하며, 선정 및 관리도 그에 준함

≪시군별 청년회원비율 ≫

연번	시군	인구 수	청년 수	청년인구비율	청년회원비율
1	수원시	1,193,005	283,195	23.7%	50%
2	용인시	1,085,864	210,771	19.4%	40%
3	고양시	1,070,120	213,375	19.9%	40%
4	화성시	968,821	199,553	20.6%	50%
5	성남시	913,009	190,224	20.8%	50%
6	부천시	769,918	154,472	20.1%	50%
7	남양주시	732,482	129,306	17.7%	40%
8	안산시	620,579	140,640	22.7%	50%
9	평택시	598,556	130,372	21.8%	50%
10	안양시	556,492	115,013	20.7%	50%
11	시흥시	518,132	103,812	20.0%	50%
12	파주시	511,308	94,969	18.6%	40%
13	김포시	486,853	82,829	17.0%	40%
14	의정부시	461,271	92,011	19.9%	40%
15	광주시	397,605	69,479	17.5%	40%
16	하남시	329,120	61,837	18.8%	40%
17	광명시	278,167	53,653	19.3%	40%
18	군포시	255,931	53,029	20.7%	50%
19	양주시	289,005	53,860	18.6%	40%
20	오산시	242,065	50,896	21.0%	50%
21	이천시	222,443	46,284	20.8%	50%
22	안성시	193,949	35,656	18.4%	40%
23	구리시	186,882	36,945	19.8%	40%
24	의왕시	154,488	31,177	20.2%	50%
25	포천시	141,463	23,495	16.6%	40%
26	양평군	126,804	15,761	12.4%	30%
27	여주시	114,610	17,466	15.2%	40%
28	동두천시	86,838	14,290	16.5%	40%
29	과천시	85,512	16,509	19.3%	40%
30	가평군	62,527	8,953	14.3%	30%
31	연천군	40,866	6,704	16.4%	40%

붙임 2 심사기준

□ 예비마을기업

심사항목	배점	구분	심사지표		
	30	정량	• 출자자수 : (상) 20인 이상 (중) 10~19인, (하) 5~9인 • 1인 최대 지분율, 특수관계인 지분율		
공동체성		정성	•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•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•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•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		
771	20	정량	•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,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•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(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)		
공공성	20	정성	•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•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•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		
710144	20	정량	•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•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•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		
지역성		20	정성	•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•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(지역자원 활용,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, 마을 관리 등)	
		정량	•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		
기업성	20	정성	• 사업모델의 차별성, 관련 사업수행 실적 •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·HACCP 유무, 관련 전문가 보유(자격증 보유자,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) 등 •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• 판매가능성(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) •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		
사업 계획의 적정성	10	정성	• 목표설정의 타당성, 사업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• 단가 산출의 적정성, 연내 집행 가능성		
가점	치대 5	3 (택1) 2	• 입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•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·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(대상사업 : 참고)		
14名	최대 5	(택1) ※ 가점	•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•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(30~50%)을 충족한 경우 남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연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		

[※] 가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붙임 3 사업비 편성기준

▶ (사업비) 보조금 + 자부담

- (보조금)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
- (자부담)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(보조금의 10~20% 이상) ※ (예시) 보조금이 1,000만원인 경우, 자부담액은 200만원 이상(이 경우 사업비는 1,200만원)

【예비마을기업】

O 주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, 교육,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

① 인건비(보수·일용임금)

- O 총사업비의 20% 이하로 편성
 - ※ 사회서비스 제공형,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%까지 편성 가능
- O 마을기업 사업비(보조금+자부담)로 마을기업의 대표, 이사, 감사 등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불가*
 - * 보조사업비(보조금 및 자부담금)가 아닌 마을기업 자체 자금으로는 지급 가능
 - 등기임원을 제외한 마을기업 회원 고용시,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
- O 인건비는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함

<질의1> 인건비에 4대 보험료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 포함이 가능한지?

⇒ 사업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 등은 간접인건비로 포함 가능함

② 운영비

≪ 일반수용비 ≫

- O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
- 포장재는 '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'에 편성하고 사업비의 10% 이하로 편성
- O 전문가 활용비
- 외래강사와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지급 가능
- 마을기업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) 및 회원 등에게는 지급 불가

- 강사비, 컨설팅 비용은 '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'을 준용하되 교통비 추가 지급은 불가

≪ 임차료 ≫

- O 임차료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의 20% 이하로 편성
- ≪ 재료비 ≫
- O 사업비의 20% 이하로 편성
- ≪ 기타 ≫
- O 기타 항목*의 총합 : 총사업비의 3% 이내로 편성 * '일반수용비' 중 '사무용품 구입비', '소모성 물품 구입비' '공공요금 및 제세'

③ 건설비(시설비)

O 시설비 중 설계비는 공사비의 4% 미만으로 편성·집행 가능

④ 자산취득비

- O 자산취득비 집행은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, 한시적(1~2개월)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
 -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의 취득은 불가 ※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물품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

≪ (예비)마을기업 회계 비목 ≫ ──

보조비목 코드/명	보조세목 코드/명	세부항목 및 설명		
[110]	[01] 보수	정규직원에 대한 보수		
인건비	[04] 일용임금	일용직,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		
		1. 사무용품 구입비 2. 인쇄비 및 유인비 - 책자, 전단,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.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		
	[01] 일반 수용 비	- 현수막,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4. 소모성 물품 구입비 5. 공고료 및 광고료		
[210] 운영비		5. 공고료 및 경고료 - tv, 신문, 잡지,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6. 전문가 활용비 -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		
	[02] 공공 요금 및 제세	1. 공공요금 - 우편요금, 전화요금, 전기·가스료, 상하수도료,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		
	[07] 임차료	1.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,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료		
	[09] 시설장비 유지비	1. 건물 및 건축설비(구축물, 기계장치), 공구, 기구, 비품,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.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(노무비와 제비용 포함)		
	[11] 재료비	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(식물 및 종자 등 포함)		
[420] 건설비	[03] 시설비	 건물, 공작물, 구축물, 대규모 기계장치,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·노임·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건물, 기계, 기구,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(재료비 포함)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		
[430] 유형 자산	[01] 자산취득비	1. 건물 및 대규모 기계, 기구, 차량 등의 취득비 2. 차량, 운반구 및 공구·기구 비품 3.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. 서류함, 책상, 의자,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		